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3

발의연월일: 2020. 6. 22.

발 의 자:이헌승・金炳旭・김정재

서병수 · 김미애 · 전봉민

이주환 · 송석준 · 홍석준

윤상현 · 김도읍 · 최형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등급, 긴급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 안전 관련 정보를 관리하도록만 하고 있는 데, 공중(公衆)이 시설물의 안전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시설물을 이용하는 공중의 알권리가 보장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등급과 중대한 결함의 이력, 안전점검등·성능평가·유지관리의 이력, 긴급안전조치현황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중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 할 수 있다. 다만,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2호부터 제5 호까지 공개할 수 있다.

- 1. 제6조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
- 2. 제16조에 따른 안전등급의 이력
- 3. 제22조에 따른 중대한 결함의 이력
- 4. 제23조에 따른 긴급안전조치 현황
- 5. 안전점검등·성능평가·유지관리의 이력
- 6. 시설물의 제원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범위와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5조의2(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한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 공개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설물관리계 획 2. 제16조에 따른 시설물관리계 회획 2. 제16조에 따른 인전등급의이력 3. 제22조에 따른 중대한 결함의이력 4. 제23조에 따른 긴급안전조치현황 5. 안전점검등·성능평가·유지관리의 이력 6. 시설물의 제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범위와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